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공고)

주주님의 댁내 평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 오전 8시 00분

2.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하이셀(주) 식당동 2층

3.회의 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분계산서)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5년 3월 22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 ~ 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5년 3월 27일 개최하는 하이셀 주식회사의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5년 3월 17일 ~ 2015년 3월 26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5년 03월 12일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양근, 이용복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별 첨1>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하이셀(주) 정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제2조(목적) 1~22 생략 23.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4.게임개발 및 판매업 25.전자 금융업 26.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27.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8.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 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 29.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 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30.위성용 장비의 부품개발, 유통, 판매업 31.자동차용 전자장비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32.스마트카 및 전자제품용 3D 디스플레이 부품의 제조, 판매업 33.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판매 및 마케팅 34.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 35.스마트카드 관련 기술연구 및 컨설팅업 36.회로기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37.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38.전 각호의 관련 기술자문 용역업 39.전 각호의 수출입업 40. 환급창구운영사업 41. 쇼핑몰 운영 및 시설관리 42.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업무 43. 환전사업 44.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5. 결제대금예치업 46. 세금환급 무인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7.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48.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업무 49. 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p>	<p>제2조(목적) 1~22 동일 (삭제) 23.게임개발 및 판매업 24.전자 금융업 25.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26.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7.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 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 28.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 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29.위성용 장비의 부품개발, 유통, 판매업 30.자동차용 전자장비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31.스마트카 및 전자제품용 3D 디스플레이 부품의 제조, 판매업 32.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판매 및 마케팅 33.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 34.스마트카드 관련 기술연구 및 컨설팅업 35.회로기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36.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37. 환급창구운영사업 38. 쇼핑몰 운영 및 시설관리업 39.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제공업 40. 환전사업 (삭제) 41.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2. 결제대금예치업 43. 세금환급 무인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4.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45.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업 46. 의료기기,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47. 의료용 장비 및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48. 의료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49. 공업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50. 생화학, 면역, 분자 및 유전자 진단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판매업 51. 바이오(Bio)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52. 의료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3. 환경 및 공업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4. 52, 53 항의 센서들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계측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 55. 위 52, 53 항의 센서들을 구현하기 위한 센서 물질들의 개발, 제조, 판매업 56. 위 52, 53 항의 센서들을 검출시스템으로 하는 분석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7. 바이오진단 및 의료기기 사업 58.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p>	<p>사업목적 추가</p>

현행	개정	개정 사유
	59. 헬스케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60. 헬스케어 서비스업 61. 의료용 프로그램 개발업 62.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용역업 63.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64. 화장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65. 화장품 도소매업 66.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67.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68.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69. 연구용역업 70. 연구개발서비스업 71.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72. 의약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73.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4.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5.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6. 식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수출입업 77. 전 각호의 관련 기술자문 용역업 78. 전 각호의 수출입업 79. 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	
(추가)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17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요청액 : 25억원
- 제18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요청액 : 25억원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17기 감사 보수한도 승인요청액 : 1억원
- 제18기 감사 보수한도 승인요청액 : 1억원